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6차 정오표 [2015.5.21.]

page	오	정
과년도 문제풀이[205p] 54번 정답	54. ㉠	54. ㉡
과년도 문제풀이[249p] 45번 해설	45. · 잡석지정은 기초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지정(배수와 무관)	45. · <u>잡석지정은 기초 하부의 배수 및 방습에 유리합니다.</u>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5차 정오표 [2015.5.12.]

page	오	정
[시공] 113	공사감리자와 협의 > 특기시방서 > 표준시방서 > 설계도면	공사감리자와 협의 > 특기시방서 > <u>설계도면 &gt; 표준시방서</u>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4차 정오표 [2015.3.4.]

page	오	정	비 고
[설비] 448	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: 7층 이상의	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: <b>11층</b> 이상의~	15.1.6개정사항 ☞ <u>하단참조</u>

### ☞ 하단참조 내용

☞ 448p 수정부분 관련

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

'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'에서  
최근 개정법 15년1월6일(시행일 15.4.7)에서는 '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
11층 이상의 층'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**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**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시행일이 15.4.7일자이므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정사항이기에 알아  
두시면 좋겠습니다.

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(NFSC 504)이  
 11층→7층→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...  
 설치높이 1~1.5m→0.8~1.5m로...  
 최근 잦은 법개정으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3차 정오표 [2015.2.27.]

page	오	정	비 고
[설비] 423	수격작용..⑤감압밸브를사용할 때	⑤감압밸브 사용 <b>하지 않을 때</b>	454p [17]해설란도 수정
[법규] 561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88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89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91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93		☞ 하단참조	해당부분 법에서 삭제

### ☞ 하단참조 내용

☞ 561p [표] 수정부분

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

①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조례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)의 제정·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~~ 삭제

③ 건축선(建築線)의 지정에 관한 사항

④ 다중이용 건축물 **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**에 관한 사항

☞ 688p [표] 수정부분(개정)

방재지구	풍수해, 산사태,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• <b>시가지방재지구</b> : 건축물·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• <b>자연방재지구</b> :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, 하천변,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
------	--

☞ 689p [표] 수정부분

방화지구						구조, 재료 및 설비	건축법 및 시행령
방재지구	<b>시가지, 자연</b>						도시계획조례

☞ 691p 학습포인트 수정부분(적색부분 추가)

1. 지구의 세분

- ㉠ 경관지구(자연·수변·시가지)
- ㉡ 미관지구(중심지·역사문화·일반)
- ㉢ 고도지구(최저·최고)
- ㉣ **방재지구(시가지방재)**
- ㉤ 보존지구(역사문화환경·중요시설물·생태계)
- ㉥ 시설보호지구(학교·공용·항만·공항시설)
- ㉦ 취락지구(자연·집단)
- ㉧ 개발진흥지구(주거·산업유통·관광휴양·복합·특정)

☞ 693p 학습포인트 수정부분(해당부분 법에서 삭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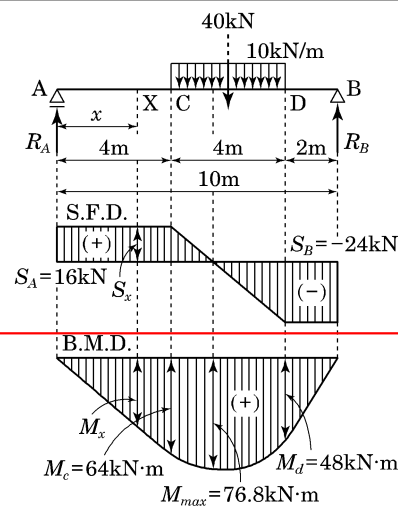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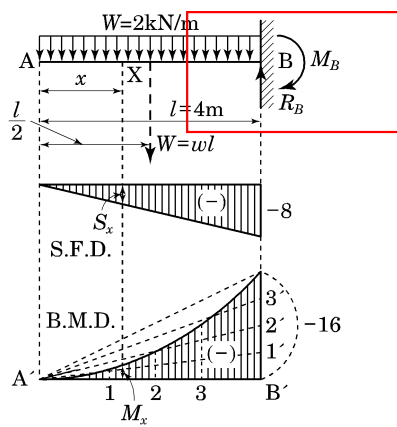
결정의 효력 및 실효

-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: **지형도면고시일로부터** 효력 발생
-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:

— 결정고사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사가 없는 경우 - 그 2년이 되는 다음날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2차 정오표 [2015.2.17.]

page	오	정				
[구조] 261	<p>2. 2. 지반조사법</p> <p>④ 표준관입 시험 : 사질지반 밀도 측정(추 63.5kg, ~</p>	<p>2. 2. 지반조사법</p> <p>④ 표준관입 시험 : 사질지반 밀도 측정(추 <b>중량</b> 63.5kg, ~</p>				
262	<p>4. 지반의 허용 지내력</p> <p><b>표 밀 내용 추가</b></p>	<p>4. 지반의 <b>장기</b>허용 지내력</p> <p><b>※ 지반의 단기허용지내력도 = 장기허용지내력도×1.5</b></p>				
263	6. 부동침하	6. 부동(부등)침하				
264	<p>2. 1)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</p> <p>① 독립기초 : 기둥 하나에 기초판을 하나씩 가지는 기초</p> <p>② 연속(줄)기초 : 조적조와 같은 벽 하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초</p> <p>2) 지정형식에 의한 분류</p> <p>① 직접기초 : 하중을 기초판으로 직접 지반에 전달하는 얇은 기초</p>	<p>2. 1)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</p> <p>① 독립기초 : <b>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초기둥을 지지하는 기초</b></p> <p>② 연속(줄)기초 : <b>조적조의 벽 하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초</b></p> <p>2) 지정형식에 의한 분류</p> <p>① 직접기초 : <b>기초판에서 하중을 직접 지반으로 전달하는 얇은 기초</b></p>				
264	<p>3. 1) 보통 지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~~~ 밀창(버림) 콘크리트</p> <p>2) 말뚝 지정</p> <p>① 기성콘크리트 말뚝 : ~~~ 8각형 단면</p>	<p>3. 1) 보통 지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~~~ 밀창(버림) 콘크리트 <b>지정</b></p> <p>2) 말뚝 지정</p> <p>① 기성콘크리트 말뚝 : ~~~ 8각형 단면 <b>등</b></p>				
268	<p>3. 6) 특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~~ 크기는 동일</p>	<p>3. 6) 특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~~ 크기는 <b>항상</b> 동일</p>				
271	<p>2) 표 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5개</td> <td>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)</td> </tr> </table>	5개	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)	<p>2) 표 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5개</td> <td>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<b>힌지에 연결된 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</b>)</td> </tr> </table>	5개	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 <b>힌지에 연결된 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</b> )
5개	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)					
5개	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 힌지절점( <b>힌지에 연결된 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</b> )					
274	<p>3) ② 전단력과 휨모멘트의 관계</p> <p>㉞ 전단력이 ⊕와 ⊖의 전환위치(<math>S=0</math>) ~</p> <p>㉟ 집중하중 작용점에는 그 하중 크기의 ~</p> <p>㊱ 전단력도보다 휨모멘트도는 한 차수 증가~</p>	<p>3) ② 전단력과 휨모멘트의 관계</p> <p>㉞ 전단력이 <b>⊕에서 ⊖로 전환하는 위치</b>(<math>S=0</math>)~</p> <p>㉟ 집중하중 작용점에는 <b>해당</b> 하중 크기의 ~</p> <p>㊱ <b>휨모멘트도는 전단력도보다</b> 한 차수 증가~</p>				
275						

page	오	정
276	<p>예제 ② 등변분포하중 3kN/m에 대한 ~</p> <p>3 그림 수정</p>	<p>예제 ② 부등변분포하중 3kN/m에 대한 ~</p> 
279	<p>2. 1) 반력 ① <math>\Sigma Y=0</math>에서 ② ~ <math>\therefore R_M = 16(\text{kN}\cdot\text{m})</math></p> <p>2. 1) 반력 그림 수정</p>	<p>2. 1) 반력 ① <math>\Sigma Y=0</math>에서 ② ~ <math>\therefore M_B = 16(\text{kN}\cdot\text{m})</math></p> 
280	<p>2) 전단력 ① <math>A \leq x \leq 2</math>일 때, ~ <math>S_x = -3x</math> <math>S_A = S_{x=2} = -3 \times 2 = -6</math>와 무관하므로 이 구간의 S.F.D는 축과 평행선</p>	<p>2) 전단력 ① <math>A \leq x \leq 2</math>일 때, ~ <math>S_x = -3x</math> ... <math>x</math>의 1차식이므로 이 구간의 S.F.D 는 축에 대하여 사선 <math>S_A = S_{x=2} = -3 \times 2 = -6</math> ... <math>x</math>와 무관하므로 이 구간의 S.F.D는 축과 평행선 (삭제)</p>

page	오	정								
283	그림 수정									
312	2) 산정 우측 그림교체									
349	2. 2) ② 표 안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7 1088 866 1218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중하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양단고정보</td> <td><math>\delta_{\max} = \frac{Pl^3}{48EI}</math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중하중	양단고정보	$\delta_{\max} = \frac{Pl^3}{48EI}$	2. 2) ② 표 안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6 1088 1345 1218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중하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양단고정보</td> <td><math>\delta_{\max} = \frac{Pl^3}{192EI}</math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중하중	양단고정보	$\delta_{\max} = \frac{Pl^3}{192EI}$
구분	집중하중									
양단고정보	$\delta_{\max} = \frac{Pl^3}{48EI}$									
구분	집중하중									
양단고정보	$\delta_{\max} = \frac{Pl^3}{192EI}$									
375	1. 1) ④ 표 안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43 1294 810 1424"> <thead> <tr> <th>온도철근 강도</th> <th>최소철근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math>f_y \leq 400\text{MPa}</math></td> <td><math>0.002 \times \frac{400}{f_y}</math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온도철근 강도	최소철근비	$f_y \leq 400\text{MPa}$	$0.002 \times \frac{400}{f_y}$	1. 1) ④ 표 안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22 1294 1289 1424"> <thead> <tr> <th>온도철근 강도</th> <th>최소철근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math>f_y &gt; 400\text{MPa}</math></td> <td><math>0.002 \times \frac{400}{f_y}</math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온도철근 강도	최소철근비	$f_y > 400\text{MPa}$	$0.002 \times \frac{400}{f_y}$
온도철근 강도	최소철근비									
$f_y \leq 400\text{MPa}$	$0.002 \times \frac{400}{f_y}$									
온도철근 강도	최소철근비									
$f_y > 400\text{MPa}$	$0.002 \times \frac{400}{f_y}$									

## 2015년판 『건축산업기사 4주완성』 1차 정오표 [2015.2.13.]

page	오	정	비 고
[시공] 239	㉗ 지붕보	㉗지중보	
[법규] 561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561	※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에서...	운수시설(여객용시설만 해당)	
565	안전관리에치금... 5000m <sup>2</sup>	1000m <sup>2</sup>	법 개정
590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10	5. ㉔..㉕ 중에서	여관, 여인숙 ... 삭제	법 개정
621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23	하단에서 7째줄	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→ 지역개발사업구역	법 개정
633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42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43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44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52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53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58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60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64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72	학습포인트에 추가사항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80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89		☞ 하단참조	
690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691		☞ 하단참조	
693	학습포인트 속 둘째줄	결정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 → 지형도면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	
701	[20] ㉔항 수정	㉔ 지형도면고시시일로	

## ☞ 하단참조 내용

[건축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!!]

### ☞ 561p [표] 수정부분

②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(단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) 삭제

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
### ☞ 590p [표] 수정부분(1. 및 8.항 추가)

#### 1.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

구분	구조계산 대상 건축물
1. 층수	3층 이상 (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지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: 2층 이상)
2. 연면적	1,000㎡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)
3. 높이	13m 이상
4. 처마높이	9m 이상
5. 경간	10m 이상 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
6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	
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·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인 건축물	
8.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	

### ☞ 621p [표] 수정부분

#### 5.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

적용제의 대상행위	적용제의 대상지역 또는 기준
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(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)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업지역</li> <li>• 주거지역(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)</li> <li>• 건축협정구역</li> <li>•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·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</li> </ul>

☞ 633p [표] 수정부분

**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**

관계전문기술자	건축물의 규모	용도 및 협력사항
건축구조기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층 이상 건축물</li> <li>• <b>특수구조 건축물</b></li> <li>• 다중이용 건축물</li> <li>•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</li> </ul>	

☞ [참고]

▶ **특수구조 건축물**

-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(支持)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·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,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)가 **20m 이상**인 건축물
- ③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
☞ 642p [표] 수정부분

(1) **특별건축구역의 대상 사업구역과 건축물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)**

구분	구역 또는 건축물
대상 사업구역	1.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다음의 사업구역 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   ㉡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㉢ 경제자유구역    ㉣ 택지개발사업구역 ㉤ 공공주택지구    ㉥ 도시개발구역 ㉦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㉧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(懸賞設計)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
	※ 대상 구역의 제외 ㉠ 개발제한구역    ㉡ 자연공원    ㉢ 접도구역    ㉣ 보전산지 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

☞ 교재의 표 내용 중에서... ㉠, ㉡, ㉢, ㉣, ㉤ 항 삭제

☞ 643p 수정부분

**2. 특별건축구역의 지정**

- ① 지정신청기관: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② 지정권자: 국토교통부장관, **시·도지사** → 중앙건축위원회 심의, 30일 이내
- ③ 건축허가: 허가권자(특별시장·광역시장·**특별자치시장**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  
→ 지방건축위원회 심의

※ 모니터링 대상 지정권자: 국토교통부장관, **시·도지사**

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처: 허가권자 [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는 5년 미만

(건축법 일부규정 배제, **완화 건축물 : 2년마다, 기타건축물 : 2년마다**)마다 제출]

☞ 644p 수정부분(개정, 적색부분 추가)

2) 적용의 완화

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다음의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㉠ 건축물의 피난시설·용도제한 등(법 제49조)
- ㉡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(법 제50조)
- ㉢ **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(법 제50조의 2)**
- ㉣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(법 제51조)
- 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(법 제52조)
- ㉥ 지하층(법 제53조)
- ㉦ 건축설비기준 등(법 제62조)
- ㉧ 승강기(법 제64조)
- ㉨ **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(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)**

☞ 652p 수정부분

5. 건축분쟁전문위원회

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(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)의 조정(調停) 및 재정(裁定)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.

1)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직

구 분	설 치	분쟁조정업무의 범위	위원의 수	임 기
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	국토교통부	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 허가건축물	15인 이내 (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 포함)	3년 (공무원 제외)
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	시,도	시장,군수,구청장 허가건축물		

☞ **줄친부분 삭제**

☞ 653p 수정부분

▶ 조정 등의 신청

-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**60일** 이내에,
-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**120일**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
6.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

- ①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자: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 
→ 강제징수: 국세 또는 **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**에 의한 징수
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권자: 특별시장·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 
→ 강제징수: **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**에 의한 징수

☞ 658p 수정부분

### 3. 주차전용건축물

주차전용 건축물		원 칙	95% 이상
단 서 규 정	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의 용도	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이 아닌 경우	95% 이상
		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 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 시설,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	70% 이상

☞ 660p 수정부분

####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:

-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-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2%부터 4%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
☞ 664p 수정부분

- ④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(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)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

☞ 672p 수정부분(추가)

#### ㉞ 50대

-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: 출입구 분리 또는 5.5m 이상의 출입구 설치
-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자주식주차장 경사로 : 너비 6m 이상의 2차선 경사차로 확보 또는 진입·진출차로를 분리
- 주차대수 50대 이상(노상주차장) : 주차대수의 2~4%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
- 주차대수 50대 이상(노외주차장) :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

☞ 680p 수정부분(표에 추가) 신설사항

#### ⑤ 지구단위계획

##### 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

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
☞ 689p 수정부분(줄친부분 삭제)

지 구	지구의 세분화	규 제 내 용				세부 규제사항	
		용도	형 태		색채		기 타
			밀도	높이			
경관지구	자연, 수변, 시가지, <b>일반</b>	●	●	●	●	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조례	

☞ 690p 수정부분 [표]중에서...

시가화조정구역	<b>시·도지사</b> 국토교통부장관	·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·계획적·단계적인 개발 도모 ※ 시가화유보기간 : 5년 이상 20년 이하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☞ 691p 수정부분(줄친부분 삭제)

1. 지구의 세분

- ㉠ 경관지구(자연 · 수변 · 시가지 · **일반**)

☞ 최근 개정, 신설된 법 주요내용 추가정리

▶ 특수구조 건축물

-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(支持)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·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,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)가 20m 이상인 건축물
- ③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
▶ 실내건축

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, 천장재, 바닥재,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벽, 천장,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
- ②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,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
- ③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·가스·급수(給水), 배수(排水)·환기시설의 재료
- ④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·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

▶ **건축물의 범죄예방**(법 제53조의2, 영 제61조의 3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상기 ①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1.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)
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)
6. 노유자시설
7. 수련시설
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
▶ **건축협정의 체결**

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,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- ㉠ 지구단위계획구역
- ㉡ 정비구역
- ㉢ 존치지역
- ㉣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